

제329회 임시회
2014. 4. 14.(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4. 14.(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4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4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4월 8일

-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3,203명 → 3,206명(+3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539명 → 1,542명 (+3명)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안 별표 3)
 - 일반직 3명 증원 : 4급 +1명, 5급이하 +2명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금번 개정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539명에서 1,542명으로 3명 증원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3,203명에서 3,206명으로 3명 증원하고, 안 별표 3의 일반직 4급을 1명, 5급 이하를 2명 1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0
----------	-----

제출연월일 : 2014년 4월 2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3,203명 → 3,206명(+3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539명 → 1,542명 (+3명)
- 직급별 정원조정 (안 별표 3)
 - 일반직 3명 증원 : 4급 +1명, 5급이하 +2명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203”을 “3,206”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39”를 “1,542”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본청의 정원 중 3명(4급 1, 5급이하 2)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u>3,206</u>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u>1,426</u>	-				
1~2급	1					1
2~3급	1		1			
3급	11	9		1		1
3~4급	2	2				
4급	<u>67</u>	<u>42</u>	7	5	7	6
5급이하 소계	<u>1,335</u>	-				
전문경력관 소계	9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11	-				
연구직 계	149	-				
연구관	27	1		24	2	
연구사	122	-				
지도직 계	24	-				
지도관	6			6		
지도사	18	-				
소방직 계	1,552	-				
소방정	14	3		11		
소방령이하	1,538	-				
교육공무원 계	42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1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203</u>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539</u>명</p> <p>2. ~ 4.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206</u>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542</u>명</p> <p>2. ~ 4. (생략)</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 회</th> <th>직 속 기관</th> <th>사 업 소</th> <th>출 장 소</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3,203</u></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1,423</u></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u>66</u></td> <td><u>41</u></td> <td>7</td> <td>5</td> <td>7</td> <td>6</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u>1,333</u></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관	사 업 소	출 장 소	총 계	<u>3,203</u>	-					⋮	⋮	-					일반직 계	<u>1,423</u>	-					⋮	⋮	⋮	⋮	⋮	⋮	⋮	4급	<u>66</u>	<u>41</u>	7	5	7	6	5급이하 소계	<u>1,333</u>	-					⋮	⋮	⋮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 회</th> <th>직 속 기관</th> <th>사 업 소</th> <th>출 장 소</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3,206</u></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1,426</u></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u>67</u></td> <td><u>42</u></td> <td>7</td> <td>5</td> <td>7</td> <td>6</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u>1,335</u></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관	사 업 소	출 장 소	총 계	<u>3,206</u>	-					⋮	⋮	-					일반직 계	<u>1,426</u>	-					⋮	⋮	⋮	⋮	⋮	⋮	⋮	4급	<u>67</u>	<u>42</u>	7	5	7	6	5급이하 소계	<u>1,335</u>	-					⋮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관	사 업 소	출 장 소																																																																																																											
총 계	<u>3,203</u>	-																																																																																																															
⋮	⋮	-																																																																																																															
일반직 계	<u>1,423</u>	-																																																																																																															
⋮	⋮	⋮	⋮	⋮	⋮	⋮																																																																																																											
4급	<u>66</u>	<u>41</u>	7	5	7	6																																																																																																											
5급이하 소계	<u>1,333</u>	-																																																																																																															
⋮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관	사 업 소	출 장 소																																																																																																											
총 계	<u>3,206</u>	-																																																																																																															
⋮	⋮	-																																																																																																															
일반직 계	<u>1,426</u>	-																																																																																																															
⋮	⋮	⋮	⋮	⋮	⋮	⋮																																																																																																											
4급	<u>67</u>	<u>42</u>	7	5	7	6																																																																																																											
5급이하 소계	<u>1,335</u>	-																																																																																																															
⋮	⋮	⋮																																																																																																															

인건비용 추계서

- 정원 변동내역 : 총정원 3,203명 ⇒ 3,206명 (증3명)
 - 일반직 +3명 (4급 1, 5급이하 2)

- 추가 소요 비용 : 143,000,157원

(단위 : 원)

구 분(예산과목)	추가 소요비용	비 고
총 계	143,000,157	
◦ 인건비	110,875,877	
- 기본급	73,602,200	
- 수 당	25,220,732	
- 정액급식비	2,730,000	
- 명절휴가비	6,308,760	
- 연가보상비	3,014,185	
◦ 물건비	5,635,000	
- 직급보조비	5,635,000	
◦ 이전경비	26,489,280	
- 성과상여금	6,587,280	
- 연금부담금	7,327,000	
- 보전금	7,543,000	
- 퇴직수당부담금	2,440,000	
- 국민건강보험금	2,592,000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